

연금시장리뷰 11호

퇴직연금제도 변화와 자산운용관리기관의 대응

- 본 자료는 기관 및 개인투자자를 위해 작성한 현대증권과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 발행하는 보고서로 퇴직연금 관련 이슈 및 경제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지전문대학 : 경영학과 신문식 교수 (02-300-1160, mardis@mail.mjc.ac.kr)

□ 퇴직연금제도 변화와 자산운용관리기관의 대응

우리나라 퇴직연금 자산운용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원리금보장상품 위주의 자산운용이라 할 수 있다. 퇴직연금의 특성상 장기투자형 자산운용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원리금보장상품, 특히 예/적금과 같은 단기저축형 자산운용이 주를 이루는 원인으로서는 장기 자산운용의 경험이 적고 장기투자에 대한 교육 기회가 부족한 근로자나 기업의 측면, 연금사업자로서의 컨설팅능력 부족 등을 무시할 수 없으나, 무엇보다도 위험자산의 투자한도 제한과 같은 규제적인 측면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특히 자산운용규제의 경우 비록 2008년 2월 퇴직연금 감독규정을 개정한 이후 자산운용규제를 일부 완화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선진 외국과 비교하여 미흡한 수준이어서 자산운용의 폭을 제한하고 있는 상태이다.

지난 2008년 8월 개정안이 발표되어 국회 상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각 제도변화에 따른 유형별 영향 정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대체로 퇴직연금 시장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복수사용자의 연합형 DC, DB/DC 혼합한 하이브리드, 신설사업자의 1년내 퇴직연금제도 설정 등 퇴직연금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포함되어 퇴직연금제도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대체적으로 퇴직연금시장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특히 DB형 보다는 DC형(IRA 포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선진외국의 경우 고령화 진전의 가속화에 따른 개인의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니즈의 증대, 공적연금에 대한 정부의 재정부담 심화 등을 주된 이유로 연금에 대한 제도 변화가 이루어졌다. 그 과정에서 가입근로자의 자기책임에 의한 제도설계와 운용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IT 기술을 이용한 온라인 및 콜센터를 이용한 서비스, 투자교육, 투자조언 및 투자일임서비스의 제공 등이 활발하다.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제도적인 변화를 고려할 때 선진국과 유사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자산운용에 대한 가입자 니즈의 증가에 따라 연금사업자간 경쟁력의 핵심은 자산운용능력에 의하여 좌우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증권회사와 같은 자산운용관리기관은 제도변화를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단기적 자산운용 성과나 기존 거래관행 의존, 수수료 등의 시장선점경쟁에서 탈피하여 자산운용 능력 등과 같은 전문성 강화와 다양한 연금상품 개발, 개인별 맞춤형 상품, 교육 및 상담 제공 등과 같은 질적 수준 제고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퇴직연금사업자로서의 증권회사의 이미지는 사회적 인지도는 물론 가입자교육, 직원의 친절성 등 퇴직연금관련 교육서비스 그리고 다양한 상품구성 등과 같은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이와 관련한 역량의 강화를 경쟁력의 주된 요소로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1 퇴직연금 자산운용 현황과 진단

○ 우리나라 퇴직연금 자산운용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원리금보장상품 위주의 자산운용이라 할 수 있음

- 퇴직연금 상품의 경우 예/적금(원리금 ELS 포함), 국공채 등의 원리금보장형 상품과 실적배당형보험, 주식/채권형펀드, 주식, 회사채 등의 실적배당형상품으로 분류
 - . 2010 년 1 월말 현재 14 조 7 천억원 규모로 성장한 퇴직연금의 대부분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이 차지하고 있으며, 실적배당형상품은 15% 전후에 불과함

<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현황(전체) >

(단위 : 천원)

구 분	원리금보장		실적배당			기타	합계
	예/적금	국공채	보험상품		간접투자		
			금리형	실적배당형			
'05 년 12 월	2,601,450	-	4,620,024	148,861	896,401	8,072,597	16,339,333
'06 년 12 월	218,846,538	38,982	345,562,589	5,968,641	72,943,131	113,394,091	756,753,972
'07 년 12 월	870,523,600	3,005,008	1,054,473,335	89,728,649	366,845,385	370,465,324	2,755,041,301
'08 년 12 월	3,143,705,076	4,599,436	2,274,162,531	89,703,421	669,076,068	430,908,473	6,612,155,006
'09 년 12 월	6,877,989,959	5,336,302	5,080,439,050	119,804,556	1,129,224,910	811,966,155	14,024,760,931
'10 년 01 월	7,787,893,354	9,015,290	5,198,597,774	118,843,849	1,179,234,338	385,147,309	14,678,731,914

*'예/적금'에 원리금보장 ELS 포함

*'기타'는 운용 등을 위한 대기자금(고유계정대, 발행어음 등)

자료 : 금융감독원

○ 원리금보장상품 위주 자산운용의 원인

- 퇴직연금의 특성상 장기투자형 자산운용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원리금보장상품, 특히 예/적금과 같은 단기저축형 자산운용이 주를 이루는 원인으로는 무엇보다도 위험자산의 투자한도 제한과 같은 규제적인 측면에 기인하는 바가 큼
- 한편, 장기 자산운용의 경험이 적고 장기투자에 대한 교육 기회가 부족한 근로자나 기업의 측면, 연금사업자로서의 컨설팅능력 부족 등의 요인도 존재,
-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적립금 자산운용에 대해 투자대상자산별로 투자가능 여부 및 투자한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음

< DB 형의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한도 >

위험자산	투자한도
주식 등에 대한 직접투자	
- 국내외 상장주식 - 추가연계증권, 파생결합증권(원금손실범위 10~40% 이내) - 외국 투자적격채권	30%
주식형 펀드 등 간접투자	
- 주식형 펀드(주식편입비중 60% 이상) - 파생상품 펀드(원금손실범위 10~40% 이내) - 부동산·실물·특별자산펀드 등	50%
혼합형펀드 등 간접투자	
- 혼합형펀드(주식편입비중 40%초과 60%미만) - 주식형, 혼합형펀드에 주로 투자하는 재간접펀드 - 외국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 등	50%

* 다만, 주식 등 위험자산이 40%이하 포함된 펀드는 운용 가능

< DC 형, IRA 의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한도 >

위험자산	투자한도
주식 등에 대한 투자	
- 국내외 상장주식, 유가증권 예탁증서 - 주식관련 사채, 후순위채권 - 추가연계증권, 파생결합증권(원금손실범위 10~40% 이내)	투자금지
주식형 펀드 등 간접투자	
- 주식형(주식편입비중 60% 이상) - 혼합형 펀드(주식편입비중 40% 초과 60% 미만) - 부동산·실물·특별자산펀드 등	투자금지
외국 유가증권 등에 대한 투자	
- 외국의 투자적격채권 - 외국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 등	30%

* 다만, 주식 등 위험자산이 40%이하 포함된 펀드는 운용 가능

- 특히 자산운용규제의 경우 비록 2008년 2월 퇴직연금 감독규정을 개정한 이후 자산운용규제를 일부 완화

. DB 형 퇴직연금의 경우 부동산·펀드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게 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선진 외국과 비교하여 미흡한 수준이어서 자산운용의 폭을 제한하고 있는 상태임

< 퇴직연금관련 자산운용규제 비교(2008년 기준) >

국가		주식	부동산	채권	펀드	대출
한국	DB	30%	50%	제한없음 (BBB-이상)	주식형./혼합형:50% 채권형 : 제한없음	투자금지
	DC	투자금지	투자금지	제한없음 (BBB-이상)	주식형 : 투자금지 혼합형 : 투자금지 채권형 : 제한없음	투자금지
미국	신중한 투자원칙 및 분산투자 원칙 (단, DB는 기업주 투자 10% 이내)					
호주	신중한 투자원칙 및 분산투자 원칙(단, 기업주 자산 5% 이내)					
덴마크		40%	40%	제한없음	40%	제한없음
캐나다		30%	25%	제한없음	30%	제한없음
독일		상장:30% 비상장:10%	25%	50%	50%	50%
일본	법령상 제한없음					

자료 : 류건식 외(2008),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보험연구원.

2. 규제환경의 변화와 영향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 지난 2008년 8월 개정안이 발표되어 국회 상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각 제도변화에 따른 유형별 영향은 정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대체로 퇴직연금 시장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개정안에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복수사용자의 연합형 DC 도입, DB/DC 혼합한 하이브리드 도입, 신설사업자의 1년내 퇴직연금제도 설정 등 퇴직연금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포함되어 퇴직연금시장의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임

○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 세계적인 회계처리기준 단일화 추세에 따라 새로 적용되는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면 퇴직급여관련 부채산정에 계속기준을 사용하게 되는 등 퇴직급여회계처리방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기존 퇴직금제도와 DB형의 회계처리가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DC형 시장의 확대가 예상됨

○ 퇴직보험·신탁제도 유예조치 만료

- 2010 년 퇴직보험(신탁)제도의 유예조치 만료에 따라 2011 년부터는 퇴직연금만이 퇴직급여의 사외적립방식으로 남게 됨
- 퇴직보험(신탁)의 유예조치 만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이며,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기대효과와 맞물려 퇴직연금시장규모가 보다 확대되는 시너지 효과로 작용할 것임

○ 자산운용규제 완화(적립금 운용체계 개선)

- 적립금 운용의 안정성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특히 DC 형의 경우 자율성이 제한되어 DC 형 가입자의 포트폴리오 운용에 제약요인으로 작용
 - . 그러나, 퇴직연금 자산운용의 일환으로 양적규제방식(legal list rule)에서 자율규제(prudent men rule) 방식에서의 규제방식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퇴직연금 규제완화가 양적규제에서 질적 규제로 전면 전환되는 경우 투자 상품의 다양화에 따라 투자리스크 및 법규준수리스크의 증대가 예상
 - . 투자운용 폭의 증대로 인해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투자선호도는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투자형 상품의 선호도는 증대될 것으로 보임

○ 퇴직연금의 예금자보호

- 퇴직연금 적립금도 예금자보호 대상으로 포함되어 DC 형 퇴직연금에 한해 정기예금이나 원금보장형 보험 상품으로 운용될 경우 개인당 5,000 만원 한도에서 예금자 보호가 가능하게 됨
- 퇴직연금상품에 대한 예금자 보호 상품 적용확대는 금융회사의 파산리스크로부터 근로자가 비교적 안심하고 금융회사에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게 되어 퇴직연금제도의 조기 정착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임
 - . 특히 DC 형 및 개인퇴직계좌에 대한 본격적인 수요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제도 변화는 퇴직연금제도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대체적으로 퇴직연금시장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특히 DB 형 보다는 DC 형(IRA 포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제도변화에 따른 유형별 영향 >

	국제회계기준	자산운용규제 완화	근태법 개정	퇴직보험/신탁폐지	예금차보호 허용	세제 개선
전체	●	●	●	●	●	●
DB형	●	●	●	●	○	●
DC/IRA형	●	●	●	●	●	●

자료 : 정승희(2009), 국내 퇴직연금시장의 주요 제도변화 및 향후 전망, The Banker.

주 : ○(낮은 긍정적 영향) ●(보통 긍정적 영향), ●(높은 긍정적 영향).

3. 선진 외국의 연금제도 변화와 영향

○ 선진 외국의 경우 고령화 진전의 가속화에 따른 개인의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니즈의 증대, 공적연금에 대한 정부의 재정부담 심화 등을 주된 이유로 연금에 대한 제도 변화가 이루어짐

- 그 방향은 공사연금 역할 분담, 시장경쟁원리 도입, 수급권보호 강화 등을 지향하였음

○ 일본

- 국민연금의 재정악화로 인한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고령화에 따른 노후보장 기능 강화 등의 필요성에 의하여 2001년 공적연금 축소와 퇴직연금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신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함

. 특히 퇴직급부에서의 연금비중의 강화와 일시금 축소 등을 중심으로 근로자의 수급권보장 및 수탁자 책임의 강화를 통한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에 주안점을 둠

- 2001년 퇴직연금관련법 제정으로 기존 퇴직연금시장을 양분하였던 후생연금기금과 적격퇴직연금은 감소하고 신 DB 형과 신 DC 형(기업형, 개인형)시장의 규모는 증가함

- 제도변화 이후 퇴직연금시장에서의 투자신탁의 성장이 두드러짐

. 퇴직연금시장은 전통적으로 신탁은행과 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이 높았으나, 제도변화 이후 투자자문업 겸업회사인 투자신탁이 성장하였으며, 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크게 감소함

< 금융기관별 퇴직연금시장 수탁점유율 추이 >

(단위: %)

	1991	1997	2001	2003	2005	2006	2007
신탁은행	59.7	53.3	48.2	56.7	47.8	48.2	46.1
보험회사	39.6	33.5	22.2	15.7	13.5	14.0	16.3
투자신탁	0.6	13.2	29.5	27.6	38.6	37.8	37.6

참고 : 일본 기업연금연합회.

- 제도변화 이후 DC 형에서 실적배당형 상품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 적격퇴직연금이 비교적 DB 형과 유사하여 DB 형 전환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제도변화 이후 퇴직연금시장에서의 DB 형과 DC 형 모두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 일반적으로 대기업의 경우 DB 형을 선호하며, 중소기업은 DC 형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며, 특히 DC 형의 경우 가입 근로자 300 명 미만의 기업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추이(단위: 만 명) >

(단위 : 만명)

구분	전통형 퇴직연금			신 퇴직연금			합계
	적격퇴직연금	후생연금기금	비중	신DB형	신DC형	비중	
2001	926(46%)	1,087(54%)	100%	-	-	0%	2,012
2003	782(43%)	837(46%)	89%	127(7%)	73(4%)	11%	1,819
2005	563(34%)	530(32%)	66%	381(23%)	166(10%)	33%	1,657
2007	442(26%)	476(28%)	54%	436(30%)	272(16%)	46%	1,700
2008	347(20%)	468(27%)	47%	607(35%)	312(18%)	53%	1,734

- 2002 년 이후 DC 형의 자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예/적금 등 원금보장상품의 비중은 축소되고 있는 반면 유가증권의 비중은 증가하는 등 실적배당상품의 운용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 DC 형의 자산구성의 경우 예/적금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49%(2004 년)→40.0%(2006 년))은 감소한 반면, 유가증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폭 증가함(31%(2004 년)→40.0%(2006 년))

- 자산운용관리기관의 대응

- . 저금리 등에 의하여 노후대책에 대한 실효성이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가입근로자는 원금손실에 대한 불안감으로 퇴직연금상품에 있어 원금보장형 상품의 가입을 선호하는 등 투자관련 대응이 미비한 상태임
- . 특히 운용관리기관의 업무에 대해서는 투자교육 담당자의 자질, 투자교육의 방법에 대한 의문점, 적절한 사례의 제공 등에 대한 불만 등 가입근로자의 만족도가 낮음
- . 또한 기본적으로 근로가입자가 DC 형 제도는 물론 자사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조차도 미흡한 상태임
- . 이에 따라 각 연금사업자는 적절한 투자교육서비스 강화 등을 통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함
- . 또한 미국 등에서 투자교육과 별도로 투자조언 및 투자일임서비스가 빠르게 보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자산군별 배분비율, 구체적인 운용상품의 구입비율 등 투자조언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음

○ 미국

- 공적연금인 사회보장연금과의 연계속에서 가입자의 자기책임하의 제도설계 및 운영의 탄력화, 연금재정의 건전성 확보, 수탁자 책임 및 수급권보호 강화 등에 초점을 두었음
- 미국의 퇴직연금시장은 임의제도로 크게 DB 형과 DC 형(IRA 포함)으로 분류 가능하며, 일시적인 시기를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 Investment Company Institute 에 의하면 1985 년 전체 퇴직자산중 가장 큰 비중(35.0%)을 차지한 DB 형의 비중은 2008 년 9 월말 현재 14.2%로 점진적인 감소세를 보인 반면, 21.9%를 차지하고 있던 DC 제도의 비중은 25.4%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 특히 DC 형의 경우 2006 년 Qualified Default Investment Alternative(QDIA)에 대한 규정 구체화에 의하여 가입 근로자의 적극적인 운용이 강조됨
 - . 최근의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등에 따라 전문가의 투자어드바이스에 의한 자산운용 필요성에 대한 가입근로자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
- 자산운용관리기관의 대응
 - . DC 형 퇴직연금사업자의 IT 기술을 이용한 온라인, 콜센터를 통한 투자어드바이스와 1:1 개별 투자 자문서비스의 제공, 개인별 교육서비스 제공 강화 등의 움직임이 활발함

○ 선진 외국 사례의 시사점

- 선진 외국은 공적연금의 재정 부담을 고려하여 퇴직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의 역할 강화를 통하여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가입근로자의 자기책임에 의한 제도설계와 운용을 강조
 - .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제도적인 변화움직임을 고려할 때 유사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판단됨
 - . 특히 정부의 재정 부담 심화는 재정 부담 완화차원에서 제도변화를 적극 추진함
 - . 이는 개인적 차원에서 고령화에 따라 개인의 생존리스크, 자산리스크를 적절히 통제·관리하고자 하는 니즈 증대와 종업원의 노후보장을 위한 재무리스크를 완화하고자 하는 기업의 니즈 증대와 맞물리면서 퇴직연금시장의 확대를 가져옴
- 우리나라의 경우도 개인 및 기업의 리스크 대응 차원에서 가입근로자의 자기책임이 더욱 강조되고, 퇴직연금이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수급권보호 강화와 제도운용의 탄력화 및 자유화가 보다 진전될 것임
 - . 따라서 퇴직연금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금사업자의 차별적인 대응노력이 요구될 것임

4. 자산운용관리기관의 대응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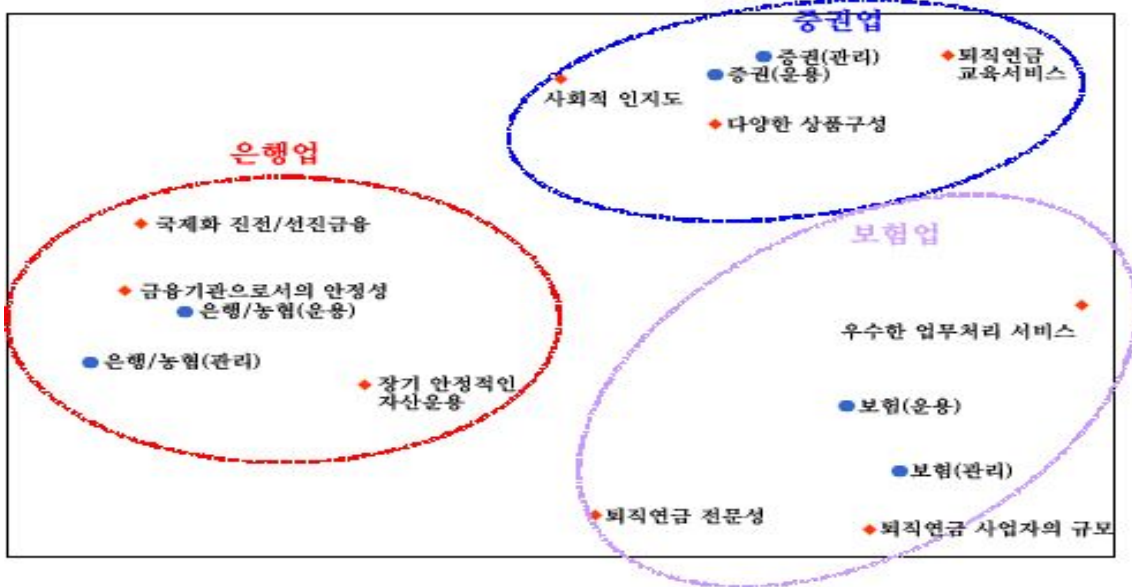
○ 선진외국의 사례와 제도변화 추이 및 영향을 고려할 때 자산운용이 중시되는 퇴직연금시장으로의 재편이 예상되므로 증권회사와 같은 자산운용관리기관은 제도변화를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임

- 특히 퇴직연금 가입근로자의 자기책임을 강조하는 경향에 따라 퇴직연금시장을 둘러싼 연금사업자간 경쟁력의 핵심은 자산운용능력에 의하여 좌우될 것임

- 따라서, 증권회사와 같은 자산운용관리기관은 사회·경제·제도적인 변화를 고려하여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프라와 시스템 구축을 통한 양질의 서비스를 구현하여 장기적인 자산운용능력을 높여야 할 것임
- 연금사업자의 경쟁력은 연금수요자의 운용기관 선택시의 고려요인을 의미하는데, 그 경쟁력은 일반적으로 수요자의 니즈에 따라 변화함
- 따라서 퇴직연금제도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개정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성장 궤도에 오를 경우에 대비한 선제적인 대응노력이 요구됨
- 예를 들어 단기적 자산운용 성과나 기존 거래관행 의존, 수수료 등의 시장선점경쟁에서 탈피하여 자산운용 능력 등과 같은 전문성 강화와 다양한 연금상품 개발, 개인별 맞춤형 상품, 교육 및 상담 제공 등과 같은 질적 수준 제고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임
- 특히 미국의 경우 DC 형 연금수요자의 연금사업자 선정의 중요 기준으로 서비스, 장기 운용성과, 재무건전성 등을 들고 있는데(Plansponsor, 2008 DC Survey), 사회·경제·제도적인 변화를 고려할 때 우리의 연금수요자도 이러한 경향을 보일 것으로 판단됨

- 퇴직연금사업자로서의 증권회사의 이미지는 사회적 인지도는 물론 가입자교육, 직원의 친절성 등 퇴직연금관련 교육서비스 그리고 다양한 상품구성 등과 같은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이와 관련한 역량의 강화를 경쟁력의 주된 요소로 확대하여야 할 것임

< 퇴직연금사업자별 선호되는 이미지 포지셔닝 >



자료 : 김원식·신문식(2006), 퇴직연금제도 도입 및 운영실태조사 보고서, 노동부.

- 제도변화는 퇴직연금시장의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므로 대응방안의 마련으로 자산운용관리기관으로서의 증권회사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임
 - 향후 시장의 확대가 기대되는 DC 형 시장에서는 적립금 운용 역량, 가입자 교육 및 상담서비스 그리고 판매채널 등이 중요한 경쟁요소로 작용할 것임

- DC 형은 가입근로자가 자신의 적립금에 대해 직접 운용 결정을 내리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가입근로자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운용상품을 선택할 수 있고, 그 자산운용을 경제 환경이나 투자환경의 변화에 따라 스스로 조정 재분배할 수 있는 역량이 매우 중요함
 - . 그러나 이는 가입자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는 형성되기 어렵기 때문에 가입자에 대한 투자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수적임
 - . 이에 따라 IT 기술을 이용한 온라인 및 콜센터를 통한 정보제공, 뉴스레터 및 투자 칼럼 제공, 투자세미나 개최 등을 이용한 적극적이고 정기적인 투자자교육 실시가 필요함
- 사회·경제·제도적인 변화로 DB 형이 감소하고 DC 형이 확대되게 되면 자산관리·재무설계 등에 대한 가입근로자 교육의 사회적 필요성이 확대될 것임
 - . 퇴직연금에 대한 투자교육의 범위는 제도에 대한 인식, 정보, 지도, 조언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형태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 퇴직연금제도는 가입근로자 스스로가 투자방법을 선택하고 투자결정을 수시로 해야 하므로 급변하는 금융산업환경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으로 무장된 전문 인력의 양성이 필수적임
 - . 또한 가입근로자에 대한 투자교육은 가입근로자의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때 교육 내용의 신뢰도와 기여도 모두 퇴직연금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높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전문 인력 양성에도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임
- 금융위기 이후 가입근로자의 투자와 관련하여 증가하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투자관련서비스의 강화노력과 함께 투자전문 금융기관으로서의 인식에 걸맞은 상품 개발(개인 맞춤형 상품 포함)과 상품운용 능력 배양에 노력하여야 할 것임

○ 투자자문서비스 확대에 대비한 전문서비스 능력의 배양

- 사회·경제·제도적인 환경변화를 고려할 때 향후 우리나라도 선진외국과 마찬가지로 가입자가 투자어드바이스를 요구하는 경향은 점점 강해질 것인데, 어느 나라나 그러하겠지만, 투자와 관련하여 정작 가입근로자가 가장 알고 싶어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매수하면 좋은가”임.
 - . 그런데 이는 투자자문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며, 법에서는 특정 운용상품의 추천 등은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자산배분 모델 외에는 제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
- 그러나 퇴직연금가입시에 가입근로자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을 매수하면 좋을 것인가” 뿐만 아니라, 자신의 연금자산잔고가 증가해간다고 하여 가입자의 운용지식이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아님
 - . 따라서 운용자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이므로 이와 관련한 법규의 개정과 이에 대비한 자산운용관리기관의 선제 노력이 요구됨
 - . DC 형 가입근로자 모두가 동일한 수준의 투자지식, 경험을 보유한다는 것은 불가능함
 - . 이러한 점 때문에 선진외국에서는 가입자가 원할 경우 운용지시를 전문가에게 일임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운용상품의 투자비율을 구체적으로 조언하는 것과 같은 투자자문서비스의 제공 능력은 향후 경쟁력 확보의 중요요소가 될 것임

명지전문대학 경영학과 신문식 교수 (02-300-1160, mardis@mail.mjc.ac.kr)